



제429회 국회 (정기회)
제5차 국회운영위원회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3급 보좌직원 신설〉

■ 김기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2950호)

2025. 11.

국회 운영 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상수

목 차

I.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(김기현의원안)	1
II. 검토의견	3

I.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(김기현의원안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기현 · 김예지 · 권성동 · 윤한홍 · 조정훈 · 서일
준 · 김석기 · 박성민 · 김정재 · 조지연 · 한지아 ·
백종현 · 우재준 · 서지영 · 김성원 · 강명구 · 신성
범 · 강대식 · 안철수 · 이달희 · 김은혜 · 주진우 ·
박성훈 · 최은석 · 김미애 · 추경호 · 최수진 · 박수
민 · 성일종 · 김위상 · 강선영 · 김선교 · 신동욱 ·
정연욱 · 한기호 · 임이자 · 박준태 · 장동혁 의원
(38인)

나. 발 의 일 : 2025. 9. 12.

다. 회 부 일 : 2025. 9. 15.

※ 의안번호 : 12950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,
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
며,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,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,

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,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,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,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.

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공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,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은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변경하고, 별표1에 있던 직급별 보좌직원의 정원을 본문에 명시하려는 것임.

[표-1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보좌직원)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(이하 “보 좌직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 <u><신 설></u>	제2조(보좌직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1. 보좌관(3급상당 별정직국가 공무원): 1명</u>
<u><신 설></u>	<u>2. 보좌관(4급상당 별정직국가 공무원): 1명</u>
<u><신 설></u>	<u>3. 선임비서관(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): 2명</u>
<u><신 설></u>	<u>4. 비서관(6급상당 별정직국가 공무원): 1명</u>
<u><신 설></u>	<u>5. 비서관(7급상당 별정직국가 공무원): 1명</u>
<u><신 설></u>	<u>6. 비서관(8급상당 별정직국가 공무원): 1명</u>
<u><신 설></u>	<u>7. 비서관(9급상당 별정직국가 공무원): 1명</u>

현행	개정안
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.	② -----제1항에서----- -----.

현행법 상 의원 1명 당 보좌직원은 4급 2명, 5급 2명, 6·7·8·9급이 각 1명씩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.

[표-2] 직급별 보좌직원 정원

보좌직원	정원
보좌관(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)	2명
선임비서관(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)	2명
비서관(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)	1명
비서관(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)	1명
비서관(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)	1명
비서관(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)	1명

자료: 「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 별표1

개정안에 따르면, 보좌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우수 인재 유입 등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역량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개정안은 ①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300명이 3급으로 조정됨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소요, ②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개정안의 경우, 신설하는 3급 보좌직원에 대하여 4급 보좌직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고, 3급 보좌직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는 점¹⁾, ③ 유사한

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과거 심사 경과²⁾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.

[표-3] 3급 보좌직원 신설 관련 과거 개정안 발의 현황

구 분 (발의일)	법률(안)명 (대표발의 의원)	주요내용
제17대국회 (‘06.12.6.)	「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(강성종의원안)	4급 보좌관 2인 중 1인을 3급으로 조정
제20대국회 (‘17.3.22.)	「국회법」, 「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(이명수의원안)	4급 보좌관 1인을 3급으로 조정하고, 8급 보좌직원 신설
제20대국회 (‘19.11.4.)	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 (강석호의원안)	정책보좌관 1인은 3급으로 1인은 4급으로 규정

문 의 처

02)6788-5014

1)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이명수의원안, 2006360)

1. 비서관 이상 보좌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
2.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상 공무원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을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2급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

2)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
(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, 2017.11.15./ 11.17.)